

2016. 6. 7. 제정

인터넷 환율서비스 이용 약정서

(주)하나은행 앞

년 월 일

본인
주소

(인)

본인은 (주)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함)과 이 약정서에 의한 거래를 함에 있어 이 약정서가 적용됨을 승인하고,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약속합니다.

제1조 (적용거래) 이 약정서는 은행과 이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현재 및 미래의 모든 거래 (이하 “환율서비스”라 함)에 적용됩니다.

1. 인터넷 환율수신 서비스 :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고시환율을 실시간으로 수신 받는 서비스
2. 환율 Ticker 서비스 :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여 은행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
3.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거래

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항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하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릅니다.

1. “고시환율”이란 은행이 대 고객거래에 적용할 목적으로 고시하는 환율을 말합니다.
2. “환율정보”란 은행의 고시환율, 외환시장환율 및 외환시장속보 등을 말합니다

제3조 (약정의 체결 및 해지, 변경)

- ① 이 약정에 의한 “환율서비스”의 이용 신청은 별첨에 의하며, 별첨의 내용은 이 약정서의 일부로 간주합니다.
- ② 약정의 체결은 서면의 “인터넷 환율서비스 이용 약정서”에 기명 날인하거나, 인터넷을 통해 “인터넷 환율서비스 이용 약정서”에 동의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할 수 있으며, 약정체결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효력의 약정서로 인정합니다.
- ③ 이 약정은 체결일부터 해지신청일까지 유효합니다.
- ④ 이 약정의 해지 또는 변경신청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⑤ 은행은 이용자가 부도, 영업정지 등의 사유발생으로 이 약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,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수수료)

- ① “환율서비스” 이용 수수료는 은행이 정하여, 전자적 수단을 통해 고시하며, 이용 수수료를 변경한 경우, 그 내용을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변경일 1주일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립니다.
- ② 이용자는 “환율서비스” 이용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며, 이를 지체한 경우 소정의 요율로 계산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③ “환율서비스” 이용 신청 익월부터 매월 첫 영업일에 별첨의 수수료 출금계좌에서 이용자의 지급청구서 없이 은행이 인출하기로 합니다.
- ④ 이 약정의 해지 시 해지 이후의 일수에 의한 수수료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.

제5조 (본인의 확인)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입력한 이용자 아이디, 접속비밀번호, 및 공인인증서가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할 경우, 은행은 이용자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.

제6조 (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) 이 약정서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를 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제7조 (면책조항) 은행에 책임 없는 천재지변, 정전, 전산상의 장애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업무처리 지연이나 업무처리 불능이 발생하여 이용자의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은행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별첨

신청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용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지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수료 출금계좌 변경 신청			
서비스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인터넷 환율수신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환율 Ticker 서비스			
성 명				
생년월일(사업자번호)				
이메일주소 (거래내역 통지)				
연락처				
(변경후) 수수료 출금계좌번호				
예금주				
인감/서명				
(은행 확인)	담당자		책임자	